

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4. 10. 22 선고 2023가단1055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A조합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24. 9. 10.

판결 선고 2024. 10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71,864,845원 및 그 중 42,212,543원에 대하여 2023. 10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가.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.

① 원고는 2018. 7. 26. 주식회사 D(이하 'D'이라 한다)과 사이에 대출금액 합계 1,154,000,000원, 대출 만료일 2021. 7. 26., 이자율 연 5%, 지연배상금율 연 3%로 하는 대출거래약정(이하 '이 사건 대출약정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② 피고는 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1,500,200,000원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.

③ 이후 원고는 D이 2019. 6. 27.부터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원금 및 이자 채권으로 위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신청을 하였고, 2020. 11. 6. 공매절차에서 1,131,587,457원을 배당받았다.

④ 한편 원고가 위 배당금을 지급받은 이후부터 2023. 10. 25.까지 변제받지 못한 대출원리금은 171,864,845원(= 대출원금 42,212,543원 + 이자 등 129,652,302원)이다.

나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원리금 171,864,845원 및 그 중 원금 42,212,543원에 대하여 2023. 10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 연 8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기본약관과 약정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, 주채무자의 신용정보에 대하여도 알리지 않는 등으로 연대보증계약이 불합리하게 체결되었거나,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의 주의의무 해태가 있으므로, 피고에게 변제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①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면서, 피고 명의로 근보증서를 작성하여 근보증서 사본을 수령한 사실, ② 근보증서에는 '이 사건 대출약정의 약관, 거래약정서 및 근보증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, 채무자의 부채현황, 연체유무 등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.'는 부동산자에 피고가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서동민